

초등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등 청구 소송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1심] 2021구합☆☆☆☆☆[1심]	사건유형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 외 56명 □□□외 17명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외 9 인천광역시교육감 외 3
판결선고일	[1심]2022. 10. 13. 원고패	비고	
사건개요	<p>○ 원고들은 '22학년도 공립초 교원 임용고시 제1차 시험에 응시한 자로, 제1차 시험 일부 문항(7개)이 ○○교대 모의고사와 소재, 문제 등이 유사 또는 일치하여, 일부 응시자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이 사건 시험을 치렀고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기가 용이하게 되었음. 이에 원고들은 불합격처분을 받거나, 합격하였더라도 2차 시험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며,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합격처분을 받은 자는 성적산정처분의 취소를, 2021. 12. 15.자 2022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행계획 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p>		
주 문	<p>1. 원고들의 소 중 피고들이 2021. 12. 15.한 각 2022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p>		
판결요약	<p>○ 이 사건 공고는 2차 시험 응시 대상이 1차 합격자라는 것을 알리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차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들 및 참가인이 ○○교대로부터 이 사건 모의고사를 수거하지 않은 것이 출제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교대 소속 응시자들의 1차 합격률이 이전 3개년도 합격률보다 낮고, 전국 교대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를 모두 배제한다면 임용시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전혀 없음.</p>		
결 론	<p>그렇다면 원고들의 소 중 이 사건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p>		